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2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1.

발 의 자 : 한민수 · 박상혁 · 허영
송옥주 · 김기표 · 장경태
이연희 · 임오경 · 조정식
김남희 · 최혁진 · 이정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범위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해석되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시점부터 취임 전까지 인사 추천 및 정책 결정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가기관 및 민간으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가 아니어서 이 기간 동안의 수뢰·증뢰·알선수재 등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대통령직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직 전반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대상에 대통령 당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당선인 시기의 뇌물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패범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법상 뇌물죄 체계의 완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또한,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도 뇌물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여 배우자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하고, 위법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의2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을 “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로, “後 公務員”을 “후 그 직에 취임하거나, 공무원”으로, “3年”을 “5년”으로, “7年”을 “10년”으로 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배우자의 수뢰) 공무원, 대통령 당선인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29조제1항의 형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第129條(收賂, 事前收賂) ① (생략)</u> ② <u>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될者가 그 擔當할 職務에 關하여 請託을 받고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後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된 때에는 3年 以下の 懲役 또는 7年 以下の 資格 停止에 處한다.</u> <u><신 설></u>	<u>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현행과 같음)</u> ② <u>대통령 당선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u> <u>-----후 그 직에 취임 하거나, 공무원-----5년-----</u> <u>-----10년-----</u> <u>-----.</u> <u>제129조의2(배우자의 수뢰) 공무원, 대통령 당선인 또는 중재인의 배우자가 그 공무원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제129조제1항의 형에 처한다.</u>